

## 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

제 1 조(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(조례 제1652호, 1988. 10. 14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2 조(충청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재해복구공채조례(조례 제1266호, 1987. 12. 18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3 조(충청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(조례 제1662호, 1988. 7. 1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4 조(충청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(조례 제1662호, 1988. 11. 25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5 조(충청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의폐지)충청북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(조례 제1651호, 1988. 10. 14)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